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-613호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6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5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113호(2020.2.3.)로 지정·공고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「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」을 취소합니다.

2024년 4월 18일

국토교통부장관

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취소

1. 지정기관명 : 한국교통안전공단